

벤처기업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,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 - 신라젠 사

례: 서울고등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9나2014316 판결



1. 계약서에 법률상 스톡옵션,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요건 보다 완화하는 것

가능 - 계약서 기재내용 우선

가)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 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, 벤처기업법 시행령, 상법 시행령 및 피고의 정관은 모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의 발생을 보충적인 취소요건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 계약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취소조항은 그 자체로 유효하며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.

나) 이 사건 취소조항은 피고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의 취지를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,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.목 내지 다.목에 열거하고 그 취소사유는 위 각 목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.

## 2. 계약서에 스톡옵션,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사유로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

### 경우도 정할 수 있음 - 계약자유, 계약서 내용 우선

이 사건 취소조항 가.목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선택권 행사 전에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그 취소사유로 규정하였는데,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, 그 규정에 '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'에 관한 귀책사유 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. 그렇다면 이 사건 취소조항 가.목은 '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'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, 이와는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### 3. 스톡옵션,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BUT 당사자가 행사하기 전 회사에서 먼저 취소

#### 하는 것 유효함 - 취소권 행사 제한사유 없음

가) 원고는 형성권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이 도래하여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피고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, 이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소권의 행사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. 또한 피고가 2018. 2. 28.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 원고가 형성권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고,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취소권의 행사를 제한할 만한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4. 그 취소권 행사로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법률상 권리남용에 해

#### 당한다고 볼 수 없음

##### **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**

원고는 피고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는 오로지 원고에게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앞서 본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과 회사의 주가에 차이가 있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, 회사로서는 그 행사가격과 주식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그 취소사유를 정하였다면 그 취소사유에 근거한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(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403 판결 참조).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 해지로 인하여 2017. 2. 22.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해소되어 이 사건 취소조항 가.목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상, 피고가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.

첨부: 서울고등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9나2014316 판결

스톡옵션, 회사소송, 기술법무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